

2017 세법학 정오표

2017. 4. 28. 기준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42면 상11	1. <u>법인</u> : 후발적 사유에 의한	1. <u>결론</u> : 후발적 사유에 의한
100면 하10	관할 세무서장이 <u>2017. 6. 15.자</u> 에	관할 세무서장이 <u>2018. 6. 15.자</u> 에
113면 (2) 1)	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.	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113면(2)1)박스	②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 금액×0.14% +	<삭제>
132면 하1~2	② 그러나 ~ 제기하여야 한다(大判 2009두21857)	<삭제>
153면 상14	2,400만원(<u>2016.12.31.까지</u>)	2,400만원(<u>2018.12.31.까지</u>)
188면 하단그림	A주식 @ <u>1,000</u> 발급	A주식 @ <u>2,000</u> 발급
202면 하3	②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부금 지정기부금	②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부 <u>한</u> 지정기부금
206면 세부사항	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	(3)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
230면 상5	<u>2016</u> 사업연도에	<u>2017</u> 사업연도에
252면 상2	Q1) (16년 기출)	Q1) (16년 기출)
328면 (2)박스		주1)을 '큰 괄호' 밖으로 이동 →] ^{주1)}
405면 상10	2) ~ (연금수령 시 원천	2) ~ (연금외수령 시 원천
471면 하2	실제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	실제로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므로
510면 하7	증여를 받은 날부터 <u>5년</u> 이내	증여를 받은 날부터 <u>1년</u> 이 되는 날에
521면 하13	(도표) ② 취득가액 : 상속세과세가액	(도표) ② 취득가액 : 상속재산가액
559면 상4~5	(-) 선준위인 상속인	(-) 선순위인 상속인
600면 상11	② ~ 대위변제할 경우 <u>을은 당초</u> 증여재산가액에	② ~ <u>을이</u> 대위변제할 경우 당초 증여재산가액에
616면 상11	소득세 상당액(종합과세 또는 ~ 상당액)	소득세 상당액 (<u>괄호삭제</u>)
648면 Q8)	<u>Q6)</u> 의 자료를 기초로 계산된	<u>Q7)</u> 의 자료를 기초로 계산된
658면 하9	과세하지 아니한다.	<u>상속세·증여세</u>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694면 상단그림	(위치) 비상장주식 → 순자산가치× <u>80%</u>	순자산가치× <u>70%</u>
778면 상11	② ~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<u>공급자로부터</u>	② ~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<u>공급받는 자로부터</u>
781면 상단도표	(빈칸 부분)	시가
793면 하9 하7	동일 과세기간 과세기간까지	<u>확정신고기한</u>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
807면 상6	<u>2016.12.31.</u>	<u>2018.12.31.</u>
836면 하12	① 중소기업자의 경우	① 중소기업자의 경우(<u>㉠ 또는 ㉡</u>)
844면 하10	과세기간 <u>이내</u> 에	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
908면 도표	③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대상 중	<u>방향용화장품</u> 삭제함

■ <지방세법> 998~1000면 취득시기 내용 추가

▪ 무상승계취득 부분 : ③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: 소유권이전등기일

▪ 간주취득 부분

(4) 존속기한·입회기간의 연장

골프회원권 등의 존속기한·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.